

언론중재사례로 본 지역 언론

이 연 수

(광주중재위원 · 전 광주KBS여수방송국장)

I. 서론

우리 나라 반론권의 맹아는 1907년(光武 11년) 7월 24일 통감부가 법률 제 1호로 반포한 광무신문지법 제20조에 규정한 내용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최초의 언론탄압 성문법이라 지칭되는 이 법에서 규정한 개념은 개인의 권리 보다는 오히려 틀린 기사의 정정보정이라는 관현적 발상에서 근거한 것이었다.

반론권이 인격권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언론중재제도의 출범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을 규정한 1980년 언론기본법은 그 출생동기의 불순함으로 인해 폐지되었으나, 우리 나라만의 독특한 반론권 제도로 정착한 언론중재제도는 그 긍정성을 인정받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정간물법이 1995년 개정되면서 반론권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9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정간물법은 그동안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지만, 성격은 반론권으로 파악되어 왔던 권리의 명칭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명문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재결정권은 언론사와 신청인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불성립되어 중재위원회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과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¹⁾

우리나라 반론권제도는 19C 후반에 반론권 조항이 생긴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그 역사가 짧지만 명예훼손에 대한 하나의 구제방법으로서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언론으로 인한 피해 조정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그 유용성을 검증받아왔다. 언론중재위원

1) 조준원, “변화하고 있는 반론권 요구와 수용”, 『밀레니엄』, 1998년 가을.

회에 접수되는 중재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60%를 상회하는 피해구제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으로 아직까지도 언론의 반론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비단 언론중재신청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라 할 수 있는 신문윤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반론권 보장 미흡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1999년과 2000년에 연속으로 제재사유 1위를 차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²⁾

이 글은 지난 5년간 광주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한 중재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신청사건의 추이와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고, 광주·전남 지역언론의 보도 양태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중재신청 대상이 된 보도가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신청 대상보도가 오보라는 평가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중재신청 대상 보도가 오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다 바람직한 보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무리한 추출은 아니라고 본다.

II. 언론중재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추세

1. 개괄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창립이후 2003년까지 처리한 중재신청사건 수는 총 7,592건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62.9%)의 사건은 서울중재부 관할이었다. 서울과 지방간 중재신청사건 구성 비율은 연도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략 6:4 정도이다. 전국의 지방중재부 가운데 광주중재부는 2003년까지 총 408건을 처리하여 경기중재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비중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경기>광주>부산중재부의 순이나 경기와 광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중재부의 비중은 5%를 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다.

2) 중앙일보, 2001. 5. 8.